정 관

제정	1982.	4.	2	개정	2006.	7.	14
개정	1982.	10.	8	개정	2008.	6.	13
개정	1983.	12.	31	개정	2009.	1.	22
개정	1985.	3.	21	개정	2011.	3.	29
개정	1989.	2.	4	개정	2015.	9.	8
개정	1991.	3.	1	개정	2016.	4.	20
개정	1993.	2.	26	개정	2016.	10.	24
개정	1995.	7.	27	개정	2019.	10.	18
개정	2003.	1.	29	개정	2020.	7.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대학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 정책에 반영케 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앙양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8.).

제2조(명칭) 이 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5.9.8.).

- 1. 대학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
- 2. 대입제도에 관한 사항
- 3. 대학재정 및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 4.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
- 5. 대학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 6. 대학정보공시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7. 대학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 8. 교육부와 기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
- 9.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0. 대학간 시설 등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11. 대학교육 관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이 협의회의 회원은 대학(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4년제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중 총회 승인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5.9.8.).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협의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대학 교직원으로서 당해 대학 총·학장의 위임을 받은 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의 2(회원의 징계) ① 회원으로서 이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 ③ 징계결과는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결정사항의 준수)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과 재정) ① 회원이 소속 대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사회의 재의에 회부하고, 이사회는 재심의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로서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① 이 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3인
- 3. 이 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 4. 감 사 2인
- ② 제22조에 규정된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한 보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총 회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 이 수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④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회원의 의사를 수합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총회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5 장의 2 지역별·기능별 분회

제21조의 2(지역별·기능별 분회) ①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별・기능별 분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의 3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

제21조의 3(대학입학전형위원회) ① 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과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신설 2008.6.13.).

②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6.13., 개정 2019.10.18).

제21조의 4(대학윤리위원회) ① 협의회는 학생선발, 학사, 교무 등 대학운영 전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윤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08.6.13.).

② 대학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8.6.13., 개정 2019.10.18.).

제21조의5(대학평가인증위원회) ①협의회는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평가·인증 업무를 위하여 대학평가인증위원회를 둔다(신설 2019.10.18.).

②대학평가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0.18.).

제 6 장 조 직

제22조(사무총장) ①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용한다(개정 2008.6.13.).

-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6.13., 2011.3.29., 2016.4.20.).
- ③ 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개정 2016.4.20.).

제23조(하부조직) ①협의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 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는 사무총장 소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의 병설기관 또는 사무총장 소속의 부설기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2., 개정 2019.10.18.).

- ② 부서의 구성과 분장 업무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1.22.).
- ③ 부서의 장은 대학 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용한다(개정 2009.1.22.).
- ④ 협의회에 전문영역별 연구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대학의 총장, 처·실· 과장 및 전문가 중에서 사무총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22.).
- ⑤ 삭제(2009.1.22.)
- ⑥ 회장 소속의 병설기관으로 한국대학평가원을 둔다. 회장은 한국대학평가원장의 대학평가·인증 업무 및 관련 조직, 예산, 인사 등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며, 평가원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9.8., 개정 2019.10.18.).
- ② 회장은 본 협의회 정관에 정한 범위내에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신설 2016.10.24).

제24조(자문위원회) 협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회장 및 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직원) ① 혐의회의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제,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26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7.14.).

- 1. 회원의 회비
- 2. 운영비지원을 위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
- 3. 기부금
- 4. 기타수입
- ② 제1항제3호의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설 2020.7.14.).

제27조(회계연도) 이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사무총장은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 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결산) 사무총장은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년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정관개정) 이 협의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①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개정 2020.7.14.).

제33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나 기본재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1982. 4. 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0.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학교육협의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1983.12.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3.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3.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1990년 5월 10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1993. 2.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7.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첫번째 사무총장의 임기는 2010년 4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1.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